

2025년 안산시 관내 BI 입주기업 브랜드 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

(재)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<경기TP안산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>의 지속성장 및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를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25년 5월 9일

(재)경기테크노파크원장

1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2025년 안산시 BI 입주기업 브랜드 강화 사업
- 지원내용 : 브랜드 신규개발/리뉴얼 및 권리화

구분	내용	비고
브랜드 개발 /리뉴얼	■ 브랜드 전략 수립 ■ 브랜드 네임 개발(신규개발에 한함) ■ 브랜드 디자인 개발(기본)	기업브랜드(CI) 또는 상품브랜드(BI) 중 택1
국내 상표 출원	■ 상표 1안의 선행조사 및 해당류 출원(1건)	

※ 지원방법 : 기업이 선호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상기 과업을 진행하고 사후 결과 보고서 및 제반 서류 제출시 검토하여 관련 소요비용(지원금 범위 내) 지원

- 지원대상 : 경기TP안산창업보육센터(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) 입주기업
- 지원(사업)기간 : 협약일 ~ 90일 이내
- 지원규모 : 3,250천원/기업, 총 1개사

※ 수행비용 공급가액의 20% 및 부가세는 참여기업 부담

2 신청 대상

○ 신청 대상

- 경기TP안산창업보육센터(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) 입주기업
※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

○ 지원 제외 대상

- 2023, 2024년 안산시BI 입주기업 브랜드 가치강화 사업 참여기업
- 본 신청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로 정부 또는 유관기관 등의 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았거나 지원이 확정된 중복과제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 규제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
- 신청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가 정부 및 유관기관 사업 등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거나,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기업

3 참여기업 선정

○ 선정방법 : 서면평가

- ※ 지원 제외 대상일 경우 평가 제외
- ※ 상황에 따라 발표평가 진행 가능

- 평가내용

평가항목	세부내용	배점
지원 필요성	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필요성	40
지원 결과물 활용계획	마케팅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/구체성	40
기대효과	기업 성장 기대효과(매출 등)	20

- 선정기준

- 평가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기업에 한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동점 발생 시 '지원 필요성', '지원 결과물 활용계획', '기대효과' 항목 순으로 고득점 기업에 우선순위 부여
- 선정포기 및 지원협약 해지 시 차순위 기업 추가선정 가능(평균점수 70점 이상 기업 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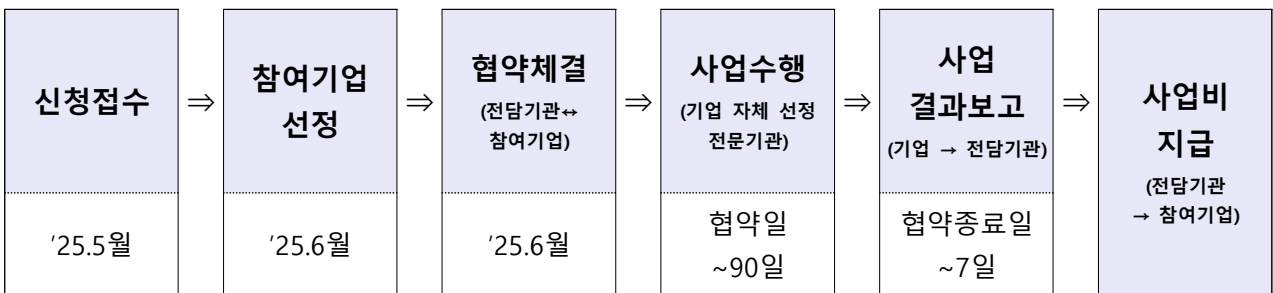
4 신청 및 접수 방법

- 접수기간 : 공고일 ~ 2025. 5. 28.
- 접수방법 : 성과관리시스템(<https://pms.gtp.or.kr>) 또는 이메일 접수(mj1226@gtp.or.kr)
 ※ 제출 후 정상 접수 여부 확인 必(18시 이후 정상 접수 여부 확인 불가)
- 제출서류(제출서류는 PDF파일 형식으로 1면 1쪽씩 배치하여 제출)

구분	제출부수	비고
① 신청서 및 참여계획서	각1부	(서식1,2)
② 사업자등록증	1부	공고일 이후 발급분
③ 재무제표(2023~2024)	각1부	해당시
④ 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원	각1부	공고일 이후 발급분 (유효기간 확인 필수)
⑤ 지원대상 적정성 자가진단 확인서	1부	(서식3)
⑥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	1부	(서식4)

- 문의처 : (재)경기테크노파크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담당자 ☎ 031-492-9901

5 진행 절차

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참여기업 선정결과는 개별 안내

6 유의 사항

- 제출서류 미비,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,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

- 접수기간 내 일부서류 누락 등 신청서류 제출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
 -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·제출하여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
 - 사업기간 내 안산시(경기TP 안산창업보육센터)에서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
- 주관기관은 과제 진행상황 점검 등에 따라 참여기업에게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**지원성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과제 종료 후 3년간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**